

靑少年保護法상의 媒體物에 관한 改善方案

Media Material Provisions in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Thereof

- 韓國法과 獨逸法の 比較分析을 중심으로 -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German Laws concerned -

연구자 : 현 대 호(부연구위원)
Hyeon Dae Ho

2005. 10.

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위원회는 매체물에 관련된 심의기능과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 등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매체물(유해매체물을 포함)의 심의기능은 청소년위원회 외의 심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설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입법기준이 요구되고 청소년을 18세미만의 자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혼인한 청소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타법의 매체물 심의기준과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소송절차를 입법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유해매체물, 인터넷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olving problems in the systems of Korea's Juvenile Protection Act and its provisions in comparison with Germany's. Policy measures that this report presents for improving the provisions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concerning media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has the powers to conduct the deliberation of media materials and the decision and execution of policies concerning the protection, etc. of juveniles. However, it is desirable to transfer its deliberation business relating to media materials (including the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to other deliberative agency than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s members and its business matters.

Secondly, it is appropriate to limit the scope of juveniles in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o any persons below 18 years old to establish unified and uniform standards of legislation for the scope of juveniles.

Thirdl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doesn't include excep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juveniles who are married. It needs to be amended to include such exceptional provisions as shown in Germany's Juvenile Protection Act.

Fourthly, the standards for the deliberation of general media materials and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stipulat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Act need to be system-

atically rearranged to be in harmony with those of media materials described in other Acts.

Lastl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doesn't clarify appeal proceedings against a decision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as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It is required that the said Act be amended to include such appeal proceedings.

※ Key word : Juveniles, Juvenile Protection Act, Minors,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Internet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설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기초분석	13
제 1 절 개 관	13
I. 서	13
II.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	14
1.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	14
2. 현행법의 체계상 문제점	21
제 2 절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체계	22
I. 한 국	22
1.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2
2. 청소년보호법의 체계와 문제점	25
II. 독 일	27
1. 청소년보호법	27
2. 청소년매체보호협약	29
제 3 장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	31
제 1 절 매체물의 대상과 적용범위	31
I. 매체물의 개념	31
1. 한 국	31
2. 독 일	31

II. 적용범위	32
1. 한 국	32
2. 독 일	33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제 2 절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	35
I. 확인의무 및 제시의무	35
1. 한 국	35
2. 독 일	35
II. 표시의무	35
1. 한 국	35
2. 독 일	36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제 3 절 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37
I. 영상물 및 게임물	37
1. 영화의 상영	37
2.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	39
3. 영상게임기	40
II. 등급표시	41
1. 한 국	41
2. 독 일	42
III. 유해매체물의 배포 및 유통의 금지	43
1. 한 국	43
2. 독 일	43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제 4 절 심의기관	45
I. 한 국	45
1. 청소년위원회	45
2. 심의기준	47
II. 독 일	48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48
2.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화	50
3. 소 송	51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제 4 장 요약 및 정리	 55
 ◆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59
 ◆ 부 록 2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협약	85
 참 고 문 헌	 105

제 1 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사회가 해체되어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문제되어 왔다. 청소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연령이고 주변환경으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국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응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화적인 차원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 각종 매체물의 발달은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켜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이 문제되고 있으며 관련된 입법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매체의 급격한 발달은 종래 언론매체와 방송매체가 중심을 차지하던 시절보다도 청소년보호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켰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유해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입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되고 있고 관련법령도 다수이지만, 가장 중요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적절한 것인가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보호법에서 매체물에 관련된 사항이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상 적절하게 규율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규율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체물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체계개선과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을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관련된 사항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매체물에 관련해서 독일의 청소년보호입법과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입법이 가장 유사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물(여기서는 주로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한정한다)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기초분석’이라는 명칭하에 제1절에서 매체물과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연혁과 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이라는 제목하에 제1절에서 매체물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제2절에서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를, 제3절에서 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제4절 심의기관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부록에서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매체보호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을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제 2 장 기초분석

제 1 절 개 관

I. 서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와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청소년매체보호협약을 포함)을 비교 분석하여 관련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이 상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즉 단순한 법명의 유사성을 넘어서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그 내용이 유사해야 하고,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매체물과 관련된 사항이 비교 가능해야 한다. 먼저,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제2장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체물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해한 약물 등과 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즉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는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룬다.

한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우리 나라의 입법은 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공연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고 이들 입법 중에서 매체물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를 다루고 있는 중요입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공연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법률을 간략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II.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

1.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한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업무(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지원청소년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 3월 개정에서 현행 청소년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업무와 보호업무가 이원적인 행정체계에 의하여 추진됨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정책의 중복 및 상호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상당부분 해소하고자 의도했다.¹⁾ 청소년

1) 2005년 개정에서 청소년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청소년정책은 보호와 육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 보호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각기 분리·수행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결여된다. 청와대 비서실도 보호정책은 정책기획수석실, 육성정책은 교육문화수석실로, 국회 상임위원회도 보호는 정무위원회, 육성은 문화관광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둘째, 정부기능분류 중 기능 중심이 아닌 (서비스)대상 중심의 부처편성의 원리를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 업무는 총괄·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보호

업무는 단일한 기능 중심의 정책집행 체계가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업무는 여러 행정부처의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2005년 개정에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업무 및 조직만을 통합 대상으로 하고 있다.²⁾ 신설된 청소년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자격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³⁾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관의 위원선출(추천방식과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보장)에 차이가 있다.

(2) 출판및인쇄진흥법

이 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는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을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

위원회의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의 경우 실질적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아 강력한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청소년 관련 정책수단의 빈곤에 놓인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일한 정책대상을 놓고 서로 유사한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유사한 청소년보호시설 중복 운영사례(개별법에 근거)로 문화관광부(청소년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가출청소년지원센터 등), 보건복지부(아동센터, 그룹 홈 등), 여성부(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청소년지원센터 등)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등 중복성이 문제되었다.

2) 정부부처별로 청소년관련업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 처 명	청 소 년 업 무 분 담 현 황
문 화 관 광 부	청소년육성정책 총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 청소년지도자, 국제청소년교류, 체육 등 청소년 업무,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시책 추진 - 매체물, 약물, 업소, 유해행위, 청소년성범죄 등 -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지원 등
재 정 경 제 부	주류관련 시책(국세청)
통 일 부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대학생 통일관련 행사지원 등)
외 교 통 상 부	청소년 국제교류,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

제 2 장 기초분석

항'과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3장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

법 무 부	범죄소년의 교정교화, 보호관찰, 직업훈련, 갱생보호 등 시책추진
국 방 부	장병의 각종 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계획수립·시행, 호국 안보교육
행 정 자 치 부 (경 찰 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직제 조정보완, 야영장 등 조성 및 관리 청소년의 비행예방활동 및 청소년 범죄 단속·처리 경찰의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가출청소년 보호업무, 각종 광고물 규제에 관한 업무, 사행행위장, 성기구 판매업소 업무 등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 교육, 학교특별 정화시책, 학생의 생활지도, 상담 등
과 학 기 술 부	청소년 과학진흥(각종 경진대회, 과학차 순회운영 등)
농 립 부	농촌청소년 농업기술 지도 및 해외연수, 임간 수련장 설치·운영, 한국 4-H 후원회 지원 등
산 업 자 원 부	술 판매·도소매업 관련(청소년 음주) 업무, 청소년유해 완구류 업무 등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윤리위 운영, 유해정보통신(음성·영상·문자 및 인터넷 관련 업무)
보 건 복 지 부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문제가정 청소년 보호지원 등 청소년 복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관리
환 경 부	유해약물(본드·부탄가스·신나 등) 및 유독물 제조·판매·취급 업소 관련업무 등
노 동 부	근로 청소년 대책, 청소년 불법취업·노동착취 등, 직업훈련, 복지시설(임대아파트, 회관 등)건립, 취업알선
건 설 교 통 부	청소년관련 기간시설 확충업무 등
해 양 수 산 부	어촌 청소년 지원 등

- 3) 청소년기본법은 그 위원의 자격으로 (i)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ii)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iii)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iv)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v)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출판및인쇄진흥법 제16조제1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17조제1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출판및인쇄진흥법 제17조제3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i)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등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ii)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iii)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수행한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18조).

(3)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개정이유로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가지(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독자의 권익보호’, 제3장에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등’, 제4장에서 ‘신문산업의 진흥 등’, 제5장에서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영화진흥법

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영화진흥법 제1조).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5장 영화의 상영, 제6장 영화진흥금고,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영화의 유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으로 영화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 상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음비게법 제1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3장 등급분류, 제4장 영입의 신고·등록·운영, 제5장 음반·비디오물 등의 수입·표시 및 광고, 제6장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비게법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입법에 해당되고 음반의 경우 사후심사제를,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6) 공연법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연법 제1조).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연,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누구나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이 경우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공연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

항). 또한 이 법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선출방식⁴⁾을 정하고 있으며 등급구분도 심사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등급구분에 관련한 것은 제3장에서 다룬다). 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동법 제17조제3항 참조)고 규정하여 음비게법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유사하지만 차이(특히,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가 있고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위원회(국무총리의 제청)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7) 전기통신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에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입법이다. 이 법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두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1항), 그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3항).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는 정보콘텐츠에 대한 등급구분과 그 심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왜냐하면 등급기준과 심의절차 등에 관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음비게법 제7조제2항 참조).

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조항에 비추어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유포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법에서는 정보콘텐츠에 대한 심의보다는 불법통신의 차단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은 제53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⁵⁾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1조).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7장 국제협력,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

5)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과 같은 불법통신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통하여 건전한 통신문화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통신행위는 (i)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ii)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iii)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iv)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v)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vi)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vii)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viii)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ix)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에서 풍속영업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등이 포함된다(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사행성기계·기구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조).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행행위영업,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 제6장 보칙 및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행법의 체계상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법률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통에 관련된 중요입법은 청소년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청소년보호법은 별도로 살펴본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명칭과 그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어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거나 어느 법률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도 모호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결정기구로서의 청소년위원회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나 매체물의 심의기관으로 청소년위원회를 규율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예컨대, 음비게법 등)과 비교하여 법체계

상 심의사항을 규율하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것도 이 법의 명칭에 비추어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사항을 별도의 입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율함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개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능 외에 유해매체물이 아닌 매체물에 대한 심의기능까지도 부여하고 있는데(자세한 것은 제3장에서 살펴본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선임방식 그리고 관련업무 등에 비추어 순수한 심의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비게법의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간행물윤리위원회처럼 위원의 선출방식(물론 이들 법률에서 위원의 선출방식에서도 독일의 심의기구에서 위원선출 방식(추천방식과 그 구성원의 다양성)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을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매체(원격매체)에 대한 심의여부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한 등급심의를 한다는 것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협약에서도 원격매체와 관련된 등급심의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불건전한 통신행위(또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적어도 현행법처럼 불건전한 통신행위를 명시하여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 2 절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체계

I. 한 국

1.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

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당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

둘째,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시행하되, 특히 전자·통신기술 및 약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및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사회·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셋째, 매체물과 약물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협회 등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할 책임과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다섯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반과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판, 공연물, 방송프로그램, 간행물, 광고선전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여부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방

송선전제한·광고시간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 및 지도·단속기관, 청소년보호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정화와 단속의 실효성 보장 및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와 청소년출입제한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청소년보호시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열번째,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각종 음란·폭력성간행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였다.

열한번째, 이 법에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징수금액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2004년의 개정

2004년 1월의 개정이유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4년 1월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일간신문 중 특수일간신문에 한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하던 것

을,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특수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류(茶類)를 외부에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넷째, 청소년에게 성적(性的) 접촉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해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금전채무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련 채권은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그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05년의 개정

2005년 개정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의 체계와 문제점

(1) 현행법의 체계

위의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연령은 제정당시와 비교하여 오히려 높아졌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를 강화하여 왔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방식도 입법으로 명시되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등급심사제도도 신설하였고 청소년위원회라는 통합기구를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여하튼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

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 법은 그 목적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매체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유해한 약물 등과 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제1장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그리고 청소년폭력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가정의 역할, 사회적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라는 장을 마련하여 나뉘도록 등급구분, 심의기준 및 심의·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 구분·격리등,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고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라고 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한 규제를 포섭하고 있다.

(2)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보호법은 약물 등과 관련된 사항과 청소년 폭력에 관련된 사항 등까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또 매체물의 심의에 관련된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심의기능의 경우 현행 음비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콘텐츠관련 심의등급의 기준과 등급분류가 다양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매체물의 등급심의기준과 등급분류는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그 체계개선은 청소년보호법, 음비계법, 영화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급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청소년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의 등급분류와 심의기준 등을 삭제하고서 음비계법, 영화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들 방안 중에서 어느 방안에 의하여도 음비계법과 영화진흥법(영상물등급위원회), 출판및인쇄진흥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규율하고 있는 심의기구의 다양성은 인정된다(자세한 것은 제3장에서 다룬다).

한편, 청소년위원회의 매체물(유해매체물을 포함)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정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또 비검열적인 성격의 기관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가 계속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구 중의 하나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위원의 선출방식을 변경하고(추천방식) 청소년 정책업무(심의기능외의 업무)와 분리된 독립된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위원회의 매체물에 대한 심의업무는 다른 심의 기구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독일

1. 청소년보호법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2003년 4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Gesetzes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 JÖSchG)과 청소년 유해문서와 유해미디어의 전파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n, GjSM)을 합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 제3장 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제4장

6) 2002년 4월 독일의 중북부도시 Erfurt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총기를 들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침입하여 16명의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청소년 보호에 관한 문제, 그 중 특히 유해미디어에 관한 통제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02년 6월 21일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률은 200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법은 입법목적상 기존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청소년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청소년 유해문서와 유해미디어의 전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일부 수정되는데 그쳤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제5장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및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의 번역물을 참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영상물에 대한 등급표시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와 제14조에 의하여 규율된다.⁷⁾ 이 법에 의하면 기존의 영상물 이외에도 영상게임프로그램(Bildschirmspielprogramm)과 프로그램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상영에 있어서도 등급표시를 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영화를 연령별로 “10세 이하”, “10-16세”, “16세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당시 등급부여는 각 주의 청소년청에 위임되어 있었다. 주차원에서 새로운 통제절차나 심사기관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각 주의 청소년청에서 자율심사협회에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7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6세 이상 상영가”, “12세 이상 상영가”, “16세 이상 상영가”, “18세 이상 상영가”로 등급이 변경되었으며, 1957년 이전에 부여된 등급은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등급이 변경되었다. 이 중에서 “18세 이상 상영가” 등급의 결정은 1972년 자율심사협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율심사협회의 등급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화업자나 비디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18세 이상 상영가”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85년 개정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모든 연령 상영가” 등급이 추가되었으며, 각 주에서 자율심사협회에 파견하는 “자율심사협회의 주청소년 상임대표” 제도가 신설되었다. 상임대표는 자율심사협회의 청소년 유해물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장이 되며 자율심사협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대신에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종전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7)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은 그것이 유해하게 작용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될 수 없고,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 (i) “연령제한 없음” (ii) “6세 이상 관람가” (iii) “12세 이상 관람가” (iv) “16세 이상 관람가” (v)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관람등급을 부여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년보호법에 의한 등급분류와 동일하게 등급을 분류한다. 다만 “18세 이하 상영불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정되었다.

2. 청소년매체보호협약

2003년 4월 1일 청소년보호법의 발효와 동시에 연방 각 주간에 청소년매체보호협약⁸⁾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방송, 텔레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에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청소년매체보호협약 제2조제1항), 공공장소에서의 영화상영이나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표시는 계속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을 침해하는 유해한 전자적 정보매체와 통신매체의 정보제공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통일적으로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 또는 기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전자적 정보매체와 통신매체의 정보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협약 제1조). 이 협약은 방송과 원격매체에 의한 내용물의 제공에 대한 통일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방송에 관한 규정, 제3절 원격매체에 관한 규정, 제4절 공영방송을 제외한 제공자에 대한 절차규정, 제5절 제공자(공영방송을 제외)에 대한 절차진행, 제6절 제공자(공영방송을 제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7절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협약의 번역물을 참조).

이 협약은 제4조에서 (i)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나 일반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의 선동행위(독일형법 제86조), (ii) 위험적 단체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독일형법 제86a조), (iii) 국가적·민족적·종교적·집단적 증오감을 자극하거나, 이들의 폭력 또는 횡포를 유인하거나, 이들 집단을 비하하고 악의적으로 경멸·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인간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iv) 민족사회주의를 표방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부정하는 등의 행위(독일헌법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v) 인간의 포악성의 찬양행위 (vi) 범죄행위(독일형법 제126조제1항)의 유인행위 (vii) 전쟁찬양의 행위 (viii)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자연스러운 성묘사 행위 (ix)

8) 2003년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

프로노와 폭력,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학대, 또는 동물과 인간의 성교를 묘사하는 행위 (x) 청소년유해매체목록 B군과 C군에 열거된 행위(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동 협약 제24조). 또 동 협약 제5조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침해하는 내용물의 제공규제를, 제6조에서는 광고나 통신판매로부터 청소년보호 등을 규율하고 있고, 방송과 관련해서는 제8조에서 방송시간의 조정을, 제10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나 표시에 대한 규제 등을 하고 있으며, 원격매체에 관련해서는 원격매체제공자의 책임을 밝히는 동시에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설치(동 협약 제11조)와 표시의무(동 협약 제12조)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협약에서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협약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을 제외한 제공자에 대한 절차규정과 서비스제공자(공영방송 제외)에 대한 절차진행 등을 규율하고 있다.

제 3 장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

제 1 절 매체물의 대상과 적용범위

I. 매체물의 개념

1. 한 국

청소년보호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i)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ii)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iii)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iv) 방송프로그램 (v)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 간행물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vi)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을 의미한다(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항). 이 개념정의는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법에 의한 개념규정으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이 추상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2. 독 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과 관련해서 기록매체와 원격매체를 구분하고 있다. 즉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기록매체”라 함은 타인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하거나 직접 인식이 가능하거나 상영기구 또는 게임기에 장착하는 형태의 유체물에 문자, 그림 또는 음향을 기록한 매체를 말한다. 기록매체의 반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에는

『방송협약』 제2조상의 방송이 아닌 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반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원격매체”라 함은 『통신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 및 『매체서비스에관한협약』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통해 전파되거나 전시되는 매체를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접근가능상태로 게재해 두는 행위도 제1문상의 전파 또는 전시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II. 적용범위

1. 한 국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령의 범위설정은 만19세의 개념과 구별되고, 소위 이를 연19세라고 한다. 청소년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현행법령에서는 다양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연령범위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상 청소년 연령 현황 >

구 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영화진흥법
청소년연령	만9~24세	연19세미만	만18세미만	만9~24세	만18세미만
소관부처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목 적	육 성	보 호	복 지	복 지	문 화
대 상 별	청소년	청소년	아 동	청소년	연소자

우리 나라의 경우 입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의 다양성과 그 적용 연령의 차이는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적용연령에도 상호 중복성이 문제된다.⁹⁾

9)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수한 용례인 연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2. 독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연령대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보다 단순하면서도 획일화되어 있다. 즉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4세 이상 18세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14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제1호 및 제2호).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개념정의는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집행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비록 청소년의 연령대에 속해 있다고 하여도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조제5항). 예컨대,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확인 및 증표제시의무), 제3조(표시의무), 제4조(음식적), 제5조(무도회), 제6조(도박장, 복표), 제7조(청소년유해행사 및 영업), 제8조(청소년유해장소), 제9조(알콜을 음료), 제10조(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제11조(영화상영), 제12조(영화 및 게임영상매체), 제13조(영상게임기) 및 제14조(영화 및 영화·게임프로그램의 등급표시)에서 혼인한 청소년을 성년자로 취급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정의가 요구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제2조제1호의 개념정의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념정의와

의하면, 아마도 연나이를 선택한 것은 18세와 19세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가 연나이가 적용되므로 사실상(평균적으로 보아) 18.5세 정도에 청소년보호연령이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의 차이를 줄이려는 그래서 중간점을 설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광위원의 지적대로 이는 바람직한 용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나이에 관한 법규정은 획일성과 통일성, 그리고 형식성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연나이 개념의 도입은 비록 18세보다는 더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법체계 전체의 통일성을 훼손하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승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향, 한림법학 FORUM 제12권, 2003. 74-75면 참조).

음비개법 제2조제13호의 개념정의는 상호 불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보호법은 제5조제5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고, 이들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개념정의를 하고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자가 비디오물감상실을 출입할 수 없는데 반하여, 음비개법에서는 18세미만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정하여 비디오물감상실을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양법사이에는 입법상 있을 수 없는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은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이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할 경우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¹⁰⁾ 결국 제정당시 청소년보호법처럼 만 18세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개념 정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만19세보다는 만18세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이 사회여건 등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혼인한 청소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법 제826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에서 혼인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년의제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컨대, 혼인한 청소년의 경우 제한상영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인용 비디오의 대여를 막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혼인한 청소년의 경우 성년자로 대우해 주어야 할 경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나름대로 신중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0) 대판 2002. 5. 24. [2001두3952]

제 2 절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

I. 확인의무 및 제시의무

1. 한 국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4조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확인증이나 관련된 증명서의 제시에 대하여 그 의무를 지우는 일반조항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2. 독 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위탁교육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동반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권한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항), 또한 이 법에 의한 연령제한을 따라야 하는 자는 요구를 받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령을 확인시켜주어야 하고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연령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항).

II. 표시의무

1. 한 국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

또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및 분류된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음비게법 제37조제1항),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음비게법 제37조제2항).

2. 독일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와 등급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자신의 행사 및 영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그리고 영화공연의 경우에는 관람제한연령 또는 등급표시를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하고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여야 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3조제1항).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연령등급 표시를 할 경우 정해진 등급표시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공연될 영화를 제공하는 자는 공연행사의 주최자에게 필름을 제공할 때 영화의 관람제한연령 또는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관람제한등급을 부여한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공지나 광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알리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이를 위반한 행사주최자나 업주는 50,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그 규율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유사하다. 다만, 영화(비디오를 포함)나 게임물의 등급부여와 등급기준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음비계법과 영화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4조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청소년 확인에 대한 증표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조항의 형태로 청소년 확인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유해업소 외의 각종 공연장이나 행사장 등에서도 행사의 주체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여 그 관람이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하게 청소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 3 절 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I. 영상물 및 게임물

1. 영화의 상영

(1) 한 국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¹¹⁾을 분류받아야 하고(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영화진흥법 제21조제2항),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

11) 영화의 상영등급은 (i) 전체관람가(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ii) 12세관람가(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iii) 15세관람가(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iv) 18세관람가(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v) 제한상영가(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등급구분을 한다(영화진흥법 제21조제3항).

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화진흥법 제21조제3항 단서 참조).

(2) 독일

독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관람을 허용하거나¹²⁾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영화, 생활지도영화 및 교육영화인 경우에 한하여 영화 공연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1항), (i)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ii) 6세 이상의 아동이 20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iii)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22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iv)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24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양육권자가 동반하는 때에만 영화공연장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며(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3항), 이 경우에 12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영화의 공연장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 한하여 6세 이상의 아동도 참석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2항).¹³⁾

12) 독일의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는 영화와 게임물에 대하여 (i) “연령제한 없음” (ii) “6세 이상 관람가” (iii) “12세 이상 관람가” (iv) “16세 이상 관람가” (v)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관람등급을 부여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13)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등급분류기관은 자율심사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 FSK)이다. 자율심사협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심사규정에 의하여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는 자율심사기관으로서 1948년에 영화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화산업최고협회(Spitzenorganisation der Filmwirtschaft e. V., SPIO)의 하부기관이다.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부여제도는 과거 나찌 시대에 영화산업이 국가의 중앙통제 구조 하에서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국가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자율심사협회는 외부적인 영향력과 국가에 의한 통제를 배제함은 물론이고 영화의 자유를 악용하여 청소년 유해물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자율심사협회는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권은 없으나, 자율심사협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방 각주가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주의 관할 행정청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평가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는 특정 필름이 자율심사협회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또는 어떠한 등급으로 상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감정함으로써 중재적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

(1) 한 국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이를 포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2) 독 일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녹화된 비디오카세트 기타 타인에게 전달하기 적합한 유형의 저장매체로서 영상기기를 이용한 관람을 위한 영화 또는 이를 이용한 게임을 위한 게임물이 프로그램 형태로 들어 있는 것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해당 연령에 대한 관람을 허용하는 표시를 하였거나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1항). 등급표시가 없거나 주최고행정기관, 자율규제기구 또는 제공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표시를 부여한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i)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 양도 기타 접근을 허용하는 일 (ii) 영업장이 없는 소매점, 가판점 기타 고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판매점이나 통신판매를 통한 매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3항).

영상매체 자동판매기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매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연령별에 따라 관람을 허용하는 매체만을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술적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i)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도로 (ii)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벗어난 장소 (iii)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관리되지 않는 출입구, 전실 또는 복도에 설치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4항).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의 데모를 담고 있는 영상매체는 해당 데모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자율규제기구가 확인하였음을 제공자가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기간행물의 부록으로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의 확인내용은 배포 이전에 정기간행물 자체와 영상매체에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5항).

3. 영상게임기

(1) 한 국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표시의무, 표장의무, 광고 등의 금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음비게임에서는 게임물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3호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21조제1항 참조).

(2) 독 일

독일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영상게임기는 주최고 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부여한 관람제한등급이 표기되어 있고 그

관람제한 연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경품이 없는 경우 또는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나 위탁교육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

또한 영상게임기는 6세 이상의 아동에 허용되는 것으로 표기된 경우 또는 “정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i)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도로 (ii)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벗어난 장소 (iii)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관리되지 않는 출입구, 전실 또는 복도에 설치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2항).

II. 등급표시

1. 한 국

비디오물 및 게임물(영화는 비디오와 비교하여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에서 차이가 있다)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음비계법 제20조제1항). 비디오물의 등급은 (i) 전체관람가(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ii) 12세관람가(1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iii) 15세관람가(1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iv) 18세관람가(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이고,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와 18세이용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로 분류한다.¹⁴⁾ 게임물의 경우 이와 같은 등급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신

14) 독일의 경우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는 범죄행위(독일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 전쟁의 찬양행위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된 기록매체의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며(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3항), 영상매체 또는 영상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된 기록매체와 내용상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 때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4항).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한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5항). 영상매체 및 영상게임기를 위한 영화프

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음비계법 제20조제3항).¹⁵⁾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음비계법 제20조제4항).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내지 게임물의 내용이 음란성이나 폭력성 등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음비계법 제20조제5항 참조).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i) 9세 이상 가(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ii) 12세 이상 가(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iii) 15세 이상 가(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독일

독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은 그것이 유해하게 작용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될 수 없으며(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는 (i) “연령제한 없음” (ii) “6세 이상 관람가” (iii) “12세 이상 관람가” (iv) “16세 이상 관람가” (v)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관람등급을 부여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2항).

로그램에 대한 등급부여는 영화공연 및 같은 내용의 해당 영화에 대해서도 유효하고, 공연용 영화의 등급표시는 영상매체 및 영상게임기를 위한 같은 내용의 영화프로그램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5항).

15) 우리나라의 경우 음비계법에서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외에 음반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22조제1항). 또 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2조제4항 참조).

주최고행정기관은 해당 업계의 협회가 설립 또는 후원하는 자율규제기구의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을 부여하는 공동절차를 합의할 수 있고, 이 합의의 틀 내에서 자율규제기구의 등급 부여는 주최고행정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주최고행정기관의 등급부여로 볼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6항). 또한 정보제공, 생활지도 또는 교육 목적의 영화·비디오물·게임물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에 무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 제공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7항).

Ⅲ. 유해매체물의 배포 및 유통의 금지

1. 한 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음비계법 제17조제1항). 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음비계법 제21조제1항).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음비계법 제21조제3항).

2. 독 일

독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i)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반포, 양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ii) 아동이나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진열, 부착,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iii) 영업장이 없는 소매점, 가판점

기타 고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판매점이나 통신판매 또는 영리성 책대여점이나 독서클럽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iv)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영리적 임대 또는 이에 준하는 영리적 대여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v) 통신판매를 통해 수입하는 행위 (vi)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는 기록매체나 원격매체의 반포를 통해 본래 영업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제공,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vii) 이들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운반, 공급,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청소년보호법 제15조제1항).

또한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기록매체로서 (i) 범죄행위(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ii)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iii) 죽거나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 (iv)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자연스럽고 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 (v)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매우 유해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은 위와 같은 통제를 받는다(청소년보호법 제15조제2항). 마찬가지로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와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매체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된 것과 동일한 통제를 받는다(청소년보호법 제15조제3항).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의 게임물과 비디오물에 대한 이용불가의 결정과 등급보류제도가 헌법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등급보류제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

을 한 바가 있으며¹⁶⁾ 정부는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과 비디오물의 경우도 영화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게임물의 이용불가나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는 등급분류의 목적(청소년보호)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심의기구가 아닌 사법기관(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비게법 제20조제4항의 이용불가 결정은 최상위의 등급분류기준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등급보류제도도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이 개선되기까지 계속하여 보류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행법처럼 청소년유해성이 명백한 음란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18세 이용가”를 부여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한 것도 부당하므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등급부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제 4 절 심의기관

I. 한 국

1. 청소년위원회

우리 나라의 경우 매체물에 관한 유해성 여부의 심의와 심의기준은 음비게법, 출판및인쇄진흥법¹⁷⁾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매체물에 관련

16)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등급보류제도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헌재 2001.08.30, [2000헌가9]).

17) 인쇄 및 출판물에 관련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i)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

된 심의기구는 청소년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심의기관과 심의대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 〉

심 의 기 관	대 상 매 체 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간행물, 만화, 전자출판물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방 송 위 원 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케이블 TV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청 소 년 위 원 회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여기서 다루는 청소년위원회는 (i)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ii)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iii) 『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iv)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v)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vi)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한다(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 제5항). 이들 업무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

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ii)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iii)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의·결정업무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청소년정책 등에 관련된 업무와 분리되어 매체물의 심의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경우이다. 여하튼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또는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으며(청소년보호법 제8조제3항),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8조제4항).

2. 심의기준

한편,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위에서 살펴본 매체물의 심의와 구별해야 한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9조제1항).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i)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ii)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iii)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iv)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v)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1항).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일반심의기준과 개별심의기준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¹⁸⁾

18)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I. 독 일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관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설치하고(청소년보호법 제 17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의 등재와 삭제에 대하여 결정한다(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2항).

1. 일반 심의기준

-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2)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구성 및 임기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각 주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각 1인 및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각 위원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의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관련분야¹⁹⁾의 추천을 받아 그 분야에 속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고(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2항), 매체의 기록 및 재생 방식이 어떠한지를 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서유통 및 출판 또는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에 비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해당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협회의 추천권

위원 및 대리인에 대한 추천권은 민간협회²⁰⁾가 가진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 추천권을 가지는 협회는 각각 1인의 위원과 1인의 대리인을 추천하여야 하고 협회로부터 복수의 추천이 있게 되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그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19) 추천을 받는 분야는 (i) 예술 (ii) 문학 (iii) 도서유통 및 출판 (iv)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자 (v)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 (vi) 공적 청소년복지 단체 (vii) 교사 (viii) 공법인인 교회, 유대교공동체 및 기타 종교공동체이다.

20) 추천권한이 있는 민간협회는 다음과 같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 (i) 예술 분야: 독일문화협회, 독일예술교육자연맹, 예술가길드, 독일그래픽디자이너연맹 (ii) 문학 분야: 독일문필가협회, 독일자유기고가협회, 독일저작자협회, 펜클럽본부 (iii) 도서유통 및 출판 분야: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 독일철도도서유통협회, 독일서적·신문·정간물유통 연방협회, 독일신문출판인 연방협회, 독일정간물출판인협회,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출판인위원회,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 내 정간물출판분과 (iv)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자 분야: 비디오 연방협회, 독일오락소프트웨어협회, 영화산업중앙본부, 정보산업·전기통신·신매체 연방협회, 독일멀티미디어협회, 전자상거래기구, 독일자동판매기산업협회, 독일비디오텍IVD조합 (v)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 분야: 자원봉사 연방협회, 독일연방청소년연대, 독일청소년체육단, 아동·청소년보호 연방협회 (vi) 공적 청소년복지 단체 분야: 독일군(郡)의회, 독일시의회, 독일시군구연합 (vii) 교사 분야: 독일노조연합 내 교육·경제노조, 독일교사협회, 교육협회, 독일카톨릭여교사연합회 (viii) 공법인인 교회, 유대교공동체 및 기타 종교공동체 분야: 독일연방공화국 EKD평의회 전권대리인, 독일 추기경 및 카톨릭 사무소 위원회(베를린), 독일 내 유대인 중앙평의회.

(3)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1항), 심의요청권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최고청소년담당행정기관,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 주청소년국, 청소년국이 가지며 저작자, 이용권자 및 원격매체의 경우 제공자는 목록 삭제에 대하여 심의요청권을 가진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2항).

2.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화

(1) 작 성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기록매체 및 원격매체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이 목록에는 특히 비윤리적이거나 난폭하거나 폭력성, 범죄 또는 인종적 적대감을 유발하는 매체가 포함되어야 하며(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1항), 이 경우 목록은 4개의 영역²¹⁾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i)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치관 측면의 내용만이 문제되는 경우 (ii) 예술이나 학문, 연구 또는 학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 (iii) 묘사의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목록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3항).

21)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i) A부(기록매체 공개 목록)에는 B, C 또는 D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록매체를 등재한다. (ii) B부(반포절대금지 기록매체 공개목록)에는 D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 제3항이나 제4항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록매체를 등재한다. (iii) C부(비공개 매체목록)에는 제24조제3항제2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A부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매체와 D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격매체를 등재한다. (iv) D부(반포절대금지 매체 비공개목록)에는 제24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B부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매체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제3항이나 제4항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원격매체를 등재한다.

(2) 등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기록매체가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등재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2조제1항). 원격매체가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등재할 수 있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2조제2항).

(3) 목록의 작성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하고(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 목록에 등재하거나 목록으로부터 삭제한다는 결정은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이에 상응하여 목록이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3. 소 송

특정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한다는 또는 목록에서의 삭제를 기각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특정매체를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다는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연방정부를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 경우 소송제기는 집행정지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송제기 전에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이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4항).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위원회는 매체물의 심의기관이자 청소년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 업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일반매체물의 심의(보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와 유해매체물의 심의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선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다루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은 금지되는데, 청소년위원회의 경우가 문제된다.²²⁾ 즉 청소년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비교하면 위원의 선출방식에 차이가 있고(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추천방식이라고 하여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²³⁾ 또 심의기능 외의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22) 현재 2001.08.30, [2000헌가9]

23)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현재 2001.08.30, [2000헌가9]).

서 심의기관으로만 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에서 매체물의 심의기능을 분리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독일의 연방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위원회는 순수한 심의기구에 해당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도 청소년보호법, 음비계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서 상이한 표현으로 마치 서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듯이 규정되어 있는데,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그 대상물의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심의기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공통되는 사항에 관련되어서는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매체물의 심의에 따른 등급분류나 유해매체물의 지정 등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법률 차원에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요약 및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 중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체계 개선과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으로 나누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요약한다).

I.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이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과 유해매체물에 관련된 사항외에도 약물 등과 관련된 사항과 청소년 폭력에 관련된 사항 등까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다양한 요소를 청소년보호라는 이름하에 다루고 있는데, 법체계상 반드시 타당한 입법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의 일반매체물에 관한 심의와 유해매체물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고, 특히 2005년 개정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설립은 행정적 효율성을 강화하였다고 하여도 심의기능과 정책기능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즉 매체물(유해매체물을 포함)의 심의기능은 독립된 기구나 다른 심의기관(예컨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II.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설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입법기준이 요구되고 이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독일과 유사하게(또는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당시처럼) 청소년의 개념을 18세미만의 자로 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혼인한 청소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성년자로 대우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제24조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청소년 확인에 대한 증표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조항의 형태로 청소년 확인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상황에서 음비계법 및 영화진흥법의 매체물 심의기준과 상호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심의기구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의 심의에 따른 등급분류나 유해매체물의 지정 등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법률차원에서 소송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2002. 7. 23. 공포 (연방법률공보 I 51, 2730면)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민법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보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위탁교육자”라 함은 18세가 넘는 자로서 보호자와의 합의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교육을 위탁받거나 교육 또는 청소년 복지의 범위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기록매체”라 함은 타인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하거나 직접 인식이 가능하거나 상영기구 또는 게임기에 장착하는 형태의 유체물에 문자, 그림 또는 음향을 기록한 매체를 말한다. 기록매체의 반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에는 「방송협약」 제2조상의 방송이 아닌 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반포, 양도, 제공 또는 전시도 포함된다.
- ③ 이 법에서 “원격매체”라 함은 「통신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 및 「매체서비스에관한협약」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 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통해 전파되거나 전시되는 매체를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접근가능상태로 게재해 두는 행위도 제1문상의 전파 또는 전시에 포함된다.
- ④ 이 법에서 “통신판매”라 함은 상품의 주문과 배달이 공급자와 주문자 사이에 인적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거나 기술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품이 배달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말한다.

부 록 1

⑤ 제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혼인한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확인 및 증표제시 의무) ① 제1조 제1항 제4호상의 위탁교육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동반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권한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연령제한을 따라야 하는 자는 요구를 받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령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연령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조 (표시의무) ①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제4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자신의 행사 및 영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그리고 영화공연의 경우에는 관람제한연령 또는 제14조 제7항상의 등급표시를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하고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사주최자 및 업주는 영화,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연령등급 표시를 할 경우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것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연될 영화를 제공하는 자는 공연행사의 주최자에게 필름을 제공할 때 영화의 관람제한연령 또는 제14조 제7항상의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관람제한등급을 부여한 영화,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나 광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알리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 2 장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제 4 조 (음식점) ①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위탁교육자가 동반하거나 05시 내지 23시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또

는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위탁교육자가 동반하지 아니하면 24시 내지 05시 사이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공인된 청소년복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여행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나이트바 또는 나이트클럽 및 이에 준하는 유흥업이 영위되는 음식점은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
- ④ 관할 관청은 제1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조 (무도회) ① 보호자 또는 위탁교육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공중 무도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24시까지만 이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 무도회가 공인된 청소년복지 단체에 의해 개최되거나 예술활동 또는 민속놀이의 일환인 경우에는 아동은 22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24시까지 참가할 수 있다.
- ③ 관할 관청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 6 조 (도박장, 복표) ① 아동과 청소년은 공중 도박장 또는 그와 유사하게 도박영업을 주로 하는 장소를 출입할 수 없다.

- ② 아동과 청소년은 민속축제, 사격대회, 대목장, 특설장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경품이 경미한 가격의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공중 복표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7 조 (청소년 유해 행사 및 영업) 아동이나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안전에 유해한 공공 행사나 영업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령제한, 시간제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유해성을 배제하거나 근본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과 함께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청소년 유해 장소) 관할관청이나 기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해당 장소 밖으로의 이동
2. 사회법 제8편 제7조 제1항 제6호상의 양육권자에게로의 인도 또는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청소년보호관청에 인도
청소년국에서의 보호관할관청이나 기구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 장소에 대하여 청소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알코올 음료) ① 음식점, 매점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1. 브랜드, 브랜드가 상당량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2. 기타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그들이 소비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 제2호는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공장소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판매기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자동판매기가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자동판매기가 갖추고 있거나 이를 위한 인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음식업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10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① 음식점, 매점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아동이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주거나 흡연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판매기가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자동판매기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를 통제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자동판매기가 갖추고 있는 경우

제 3 장 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 1 절 기록매체

제11조 (영화상영) ① 아동과 청소년은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관람을 허용하거나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영화, 생활지도영화 및 교육영화인 경우에 한하여 영화공연장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영화의 공연장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6세 이상의 아동도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양육권자가 동반하는 때에만 영화공연장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1.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2. 6세 이상의 아동이 20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3.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22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4.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24시 이후에 공연이 끝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영화의 기록방식 및 상영방식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광고와 부속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영화가 본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실제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지도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담배와 알코올 음료를 선전하는 광고영화와 광고프로그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8시 이후에 상영될 수 있다.

제12조 (영화 또는 게임 영상매체) ① 녹화된 비디오카세트 기타 타인에게 전달하기 적합한 유형의 저장매체로서 영상기기를 이용한 관람을 위한 영화 또는 이를 이용한 게임을 위한 게임물이 프로그램 형태로 들어있는 것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해당 연령에 대한 관람을 허용하는 표시를 하였거나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제1항의 표시는 영상매체와 포장재에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한 기호로 표기되어야 한다. 주최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호의 구체적인 내용, 크기, 형식, 색상 및 표기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
2. 영상매체 또는 포장재에 대한 표시의무의 예외 허용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을 반포하는 원격매체 제공자는 자신의 제품상의 표시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등급표시가 없거나,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 또는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공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표시를 부여한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 양도 기타 접근을 허용하는 일

2. 영업장이 없는 소매점, 가관점 기타 고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판매점이나 통신판매를 통한 매매 또는 양도

④ 영상매체 자동판매기는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매체만을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자신의 연령별에 따라 관람을 허용하는 매체만을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술적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

1.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도로
2.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벗어난 장소
3.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관리되지 않는 출입구, 전실 또는 복도

⑤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의 데모를 담고 있는 영상매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모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자율규제기구가 확인하였음을 제공자가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기간행물의 부록으로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의 확인내용은 배포 이전에 정기간행물 자체와 영상매체에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제2문에 준용한다. 주최고행정기관은 제1문에 따른 배포허가를 개별 제공자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영상게임기) ① 경품이 걸려있지 않은 전자식 영상게임기는 주최고행정기관이나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부여한 관람제한등급이 표기되어 있고 그 관람제한 연령을 위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작자가 “정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나 위탁교육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식 영상게임기는 6세 이상의 아동에게 허용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정보프로그

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

1.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도로
 2.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벗어난 장소
 3. 영업장 기타 직장 또는 매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관리되지 않는 출입구, 전실 또는 복도
- ③ 영상게임기의 등급표시에 대해서는 제12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의 등급표시) ①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은 그것이 유해하게 작용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될 수 없다.

②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등급을 부여한다.

1. “연령제한 없음”
2. “6세 이상 관람가”
3. “12세 이상 관람가”
4. “16세 이상 관람가”
5. “청소년 관람불가”

③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제18조의 목록에 등재된 기록매체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주최고행정기관은 제15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상매체 또는 영상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18조의 목록에 등재된 기록매체와 내용상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 때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등재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기구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한다.

⑤ 영상매체 및 영상게임기를 위한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부여는 영화공연 및 같은 내용의 해당 영화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공연용 영화의 등급표시는 영상매체 및 영상게임기를 위한 같은 내용의 영화 프로그램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이 준용된다.

⑥ 주최고행정기관은 해당 업계의 협회가 설립 또는 후원하는 자율규제기구의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의 등급을 부여하는 공동절차를 합의할 수 있다. 이 합의의 틀 내에서 자율규제기구의 등급부여는 주최고행정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주최고행정기관의 등급부여로 볼 수 있다.

⑦ 정보제공, 생활지도 또는 교육 목적의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에 무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 제공자가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최고행정기관은 제공자표시권한을 개별 제공자 또는 특정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한하고 해당 제공자가 부여한 표시를 폐기할 수 있다.

⑧ 영화, 영상매체 또는 영상게임기가 등급표시 대상인 영화·게임 프로그램 외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의 제목, 부록 또는 기타 문구, 영상 혹은 음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급 판정 이전에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청소년유해 기록매체) ① 제24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반포, 양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아동이나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진열, 부착,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부 록 1

3. 영업장이 없는 소매점, 가관점 기타 고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판매점이나 통신판매 또는 영리성 책대여점이나 독서클럽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영리적 임대 또는 이에 준하는 영리적 대여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통신판매를 통해 수입하는 행위
 6.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는 기록매체나 원격매체의 반포를 통해 본래 영업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제공,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운반, 공급,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 ②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기록매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제1항의 통제를 받는다.
1.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2.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3. 죽거나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
 4.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자연스럽고 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
 5.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매우 유해함이 명백한 경우
- ③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와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매체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제1항의 통제를 받는다.

- ④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은 영업적 광고의 목적으로 인쇄 또는 출판되어서는 아니된다.
- ⑤ 기록매체 또는 같은 내용의 원격매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바 있다는 사실을 영업적 광고를 통해 알려서는 아니된다.
- ⑥ 공급이 허용되면 생산자는 판매업자에게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상의 통제 내용을 공급하기 이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 절 원격매체

제16조 (원격매체에 대한 특별규정) 제18조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된 원격매체에 대해서는 주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제17조 (명칭과 관할) ① 연방심의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라 칭한다.
②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의 등재와 삭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①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기록매체 및 원격매체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 목록에는 특히 비윤리적이거나 난폭하거나 폭력성, 범죄 또는 인종적 적대감을 유발하는 매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A부(기록매체 공개목록)에는 B, C 또는 D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록매체를 등재한다.
2. B부(반포절대금지 기록매체 공개목록)에는 D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 제3항이나 제4항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록매체를 등재한다.

3. C부(비공개 매체목록)에는 제24조 제3항 제2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A부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매체와 D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격매체를 등재한다.

4. D부(반포절대금지 매체 비공개목록)에는 제24조 제3항 제2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B부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매체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 제3항이나 제4항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원격매체를 등재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록에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치관 측면의 내용만이 문제되는 경우

2. 예술이나 학문, 연구 또는 학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

3. 묘사의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 경우

④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매체는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⑥ 주중양청소년매체보호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이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요청된 원격매체를 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 등재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등재 이후 25년이 지나면 등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⑧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등급이 부여된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이 이미 제1항상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원격매체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인된 자율규제기구가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한 원격매체에 대해서는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이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각 주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각 1인 및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각 위원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의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제1항의 임명권을 주최고행정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야의 추천을 받아 그 분야에 속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예술
2. 문학
3. 도서유통 및 출판
4.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자
5.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
6. 공적 청소년복지 단체
7. 교사
8. 공법인인 교회, 유대교공동체 및 기타 종교공동체

매체의 기록 및 재생 방식이 어떠한 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서유통 및 출판 또는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에 비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해당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

료되기 이전에 해임될 수 있다.

④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

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정부가 임명한 위원 3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분야의 위원 각 1인 등 12명의 구성원으로 의결한다. 임명된 위원장이나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일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⑥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하는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항 제2문의 경우에는 최소한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등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협회의 추천권) 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및 대리인에 대한 추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협회가 가진다.

1. 예술 분야 :

- 독일문화협회
- 독일예술교육자연맹
- 예술가길드
- 독일그래픽디자이너연맹

2. 문학 분야 :

- 독일문필가협회
- 독일자유기고가협회
- 독일저작자협회
- 펜클럽본부

3. 도서유통 및 출판 분야 :

-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
- 독일철도도서유통협회
- 독일서적·신문·정간물유통 연방협회
- 독일신문출판인 연방협회

독일정간물출판인협회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 - 출판인위원회

독일도서유통상인조합 내 정간물출판분과

4. 영상매체 및 원격매체 공급자 분야 :

비디오 연방협회

독일오락소프트웨어협회

영화산업중앙본부

정보산업·전기통신·신매체 연방협회

독일멀티미디어협회

전자상거래기구

독일자동판매기산업협회

독일비디오텍IVD조합

5.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 분야 :

자원봉사 연방협회

독일연방청소년연대

독일청소년체육단

아동·청소년보호 연방협회

6. 공적 청소년복지 단체 분야 :

독일군(郡)의회

독일시의회

독일시군구연합

7. 교사 분야 :

독일노조연합 내 교육·경제노조

독일교사협회

교육협회

독일카톨릭여교사연합회

8. 공법인인 교회, 유대교공동체 및 기타 종교공동체 분야 :

독일연방공화국 EKD평의회 전권대리인

독일 추기경 및 카톨릭 사무소 위원회 (베를린)

독일 내 유대인 중앙평의회

추천권을 가지는 협회는 각각 1인의 위원과 1인의 대리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문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부터 복수의 추천이 있게 되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그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②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의 위원과 대리인은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단체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매년 1월에 연방관보를 통해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기간 내에 이루어진 추천결과로부터 각 분야별로 추가적인 위원과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독자적 협회로서의 성격이 약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단체의 추천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수 이해당사자로부터 서로 다른 추천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 분야의 명칭이 특정되어 있는 단체로부터의 추천이 다수 누락된 경우에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다수의 위원과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심의절차) 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요청권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최고청소년담당행정기관,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 주청소년국, 청소년국이 가지며 제7항에 규정된 자는 목록 삭제에 대하여 심의요청권을 가진다.

③ 목록 등재 또는 삭제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 또는 공인된 청소년복지 자원봉사단체의 요청이 있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의한다.

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한다.

1. 목록에 등재된 매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매체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18조 제7항 제1문에 따라 등재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제18조 제7항 제2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서 목록 등재 요건은 계속 충족되는 경우

⑥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원격매체에 대한 목록 등재 결정을 하기 전에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으로 하여금 즉각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의 견해를 중시하여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고 나서 5 근무일이 지나도록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의 견해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저작자, 이용권자 및 원격매체의 경우 제공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⑧ 결정 결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 기록매체의 경우 저작자 및 이용권자
2. 원격매체의 경우 저작자와 제공자
3. 심의를 요청한 행정기관
4.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최고청소년담당행정기관 및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

통지는 결정에 따른 반포 및 광고 제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시해야 한다. 결정근거는 통지문에 첨부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한다.

⑨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주중앙청소년매체보호국과 협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가 교환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간행 기록매체 및 원격매체의 등재) ①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기록매체가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의 기간

을 정하여 등재할 수 있다. 다만, 일간지와 정치적 정기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② 원격매체가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간이절차) 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함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체에 대하여 위원장 1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 2인이 참석한 간이절차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 만장일치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제19조 제5항).

②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 등재에 대해서는 간이절차에서 결정할 수 없다.

③ 간이절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제21조 제7항)가 1월 이내에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에 전원회의를 통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는 목록 등재 이후 10년이 경과한 매체에 대하여 제21조 제5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간이절차에서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기록매체 또는 원격매체가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판매, 반포 또는 접근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목록에 등재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간이절차에서 잠정적인 목록 등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잠정적으로 등재된 사항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정식 결정과 동시에 또는 등재 이후 1월이 경과하면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제1문의 기간은 만료 이전에 최장 1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잠정적 등재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의 작성) ①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등재하거나 목록으로부터 삭제한다는 결정은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이에 상응하여 목록이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③ 기록매체가 목록에 등재되거나 삭제되는 때에는 이 사실을 그 근거가 되는 결정과 함께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록매체가 이미 원격매체를 통해 반포되었거나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에 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의 B부 또는 D부에 등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된 매체의 내용이 해당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이를 A부 또는 C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해당 매체가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구한다.

⑤ 원격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고 배포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용자 필터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매체 분야의 공인된 자율규제단체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송절차) ① 특정 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한다는 또는 목록에서의 삭제를 기각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② 특정 매체를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다는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한다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송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연방정부를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소송제기는 집행정지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소송제기 전에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원회의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 5 장 권한의 위임

제26조 (권한의 위임)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의 사무소와 심의절차 및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의 제정 권한은 연방정부에 위임되며 이 시행령의 제정시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벌 칙

제27조 (형사처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록매체를 제공, 양도, 전시, 전람, 부착, 공연, 수입, 광고 또는 선전한 자
2. 제1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록매체를 생산, 운반, 공급, 보관 또는 수입한 자
3.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을 인쇄 또는 출판한 자
4.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적 광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자
5. 제21조 제8항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사주최자 및 업주도 또한 같다.

1. 제2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8호 또는 제19호에 열거된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고 이를 통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아동

이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윤리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 자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8호 또는 제19호에 열거된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의 일수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 제1호의 행위

2.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

④ 해당 매체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제공, 양도 또는 전시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제공, 양도 또는 전시행위를 통해 자신의 양육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벌칙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행사주최자 또는 업주를 벌칙자로 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의 행사장이나 영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

3. 제3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알려주거나, 적시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3조 제2항 제3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 또는 영화프로그램 또는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5.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한 자

6.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중 무도회에 참가하도록 한 자

7.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중 도박장 또는 규정에 열거된 장소에 출입하도록 한 자

부 록 1

8.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품이 걸린 복표행사에 참가하도록 한 자
 9. 제7조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이를 소비하도록 한 자
 11. 제9조 제3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해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한 자
 1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를 제공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흡연을 하도록 한 자
 13. 제10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자
 14.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항 제2문과 관련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화공연, 광고 또는 부속 프로그램을 관람하도록 한 자
 - 14a.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영화 또는 광고프로그램을 상영한 자
 15.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상매체에 접근하도록 한 자
 16. 제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상매체를 제공 또는 양도한 자
 17. 제12조 제4항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판매기 또는 영상게임기를 설치한 자
 18. 제12조 제5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상매체를 배포한 자
 19.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상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자
 20.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제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알려주거나, 적시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
- ② 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사람을 범칙자로 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문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항 제3문 또는 제13조 제3항과 관련하여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알리지 않거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2문과 제5항 제3문 또는 제13조 제3항 내지는 제14조 제7항 제3문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5항 제2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알리지 않거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표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 제7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 또는 영화·게임프로그램에 “정보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기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사람을 범칙자로 한다.
1. 제12조 제2항 제3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표시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알리지 않거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자
 2. 제24조 제5항 제2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내용을 이용한 자
- ④ 18세 이상의 자로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 또는 제19호나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동 또는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하거나 제7조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한 사람을 범칙자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범칙자에 대해서는 50,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 7 장 부 칙

제29조 (경과규정) 종래의 규정에 따라 “18세미만 관람불가”로 등급표시된 영상매체용 영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라는 문구를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제18조 제8항 제1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시행, 폐지) ① 이 법은 『인권보호및방송·원격매체에서의청소년보호에관한협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장소에서의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제정 1985. 2. 25. 연방법률공보 I 425면, 최근 개정 2001. 12. 15. 법률 제8a조 연방법률공보 I 3762면)과 『청소년유해문서및매체의배포에관한법률』(공포 1985. 7. 12. 연방법률공보 I 1502면, 최근 개정 2001. 12. 15. 법률 제8b조 연방법률공보 I 3762면)은 폐지된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 법의 시행일을 연방법률공보에 게재한다.

② 제1항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2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협약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2002년 9월 10일-27일의 주협약

제 1 절 일반규정

제 1 조 【주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을 침해하는 유해한 전자적 정보매체와 통신매체의 정보원(제공)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통일적으로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 또는 기타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을 침해하는 전자적 정보매체와 통신매체의 정보원(제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주협약은 전자적 정보매체 및 통신매체(방송과 원격매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이 주협약은 원격통신서비스제공 및 1996. 7. 25.에 입법되고 최종적으로 2002. 6. 21.의 법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통신법 제3조에 따라 원격정보서비스의 영업적 제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1997. 7. 21.에 입법되고 최종적으로 2001. 12. 14.의 법 제1조에 따라 개정된 원격서비스법과 1997. 1. 20. - 동년 2. 12.까지 체결되고 최종적으로 2001. 12. 20./21.의 제6차 放送改正州協約 제3조에 따라 개정된 매체서비스주협약은 이 협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 ① 이 협약에서 아동이란 14세 미만자이며,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말한다.

②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1. ‘원격매체’라 함은 원격서비스법상의 원격서비스 및 매체서비스주 협약상의 매체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放送州協約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해당하는 원격서비스와 매체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공’이라 함은 방송송신 또는 원격매체의 내용물을 말한다.
3. ‘제공자’라 함은 방송운영자 또는 원격매체의 제공자를 말한다.

제 4 조 【불법제공】

① 다음의 제공은 형법적 책임의 성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일반정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86조상의 선동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2. 형법 제86a조에서 정하는 위헌적 단체의 표식을 사용한 경우
3. 일부주민 내지는 국가적·민족적·종교적 또는 특정된 민중의 집단적 증오심을 자극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 또는 횡포를 권유하거나, 일부주민 또는 위에서 열거한 집단을 비하하고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
4. 민족사회주의의 이름아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해하는 방법으로 국민헌법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5. 인간에 대한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광포행위를 찬양하거나 무해하다고 표현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관포행위를 다루는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6. 형법 제126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7.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8. 특히 죽어가고 있거나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처해있거나 처해졌던 인간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 그러한 묘사 또는 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사실을 재현한

경우라야 하며 동의의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9.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부자연스럽게 성을 내세운 묘사를 한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0. 포르노그래픽과 폭력행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학대 또는 동물과 인간의 성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1.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중 B군과 C군에 열거되었거나 이 목록에 열거된 작품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법 제86조 제3항이 적용되며, 제5호의 경우에는 형법 제131조 제3항이 적용된다.

② 나아가 다음의 제공도 그 형법적 책임의 성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기타의 방법으로 포르노성의 제공인 경우

2.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A군과 C군에 열거되어 있거나 또는 이 목록에 열거된 작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3. 전과매체의 과급효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공동체적 인격체로의 교육을 매우 위협하게 하는 것이 명백한 제공인 경우

원격매체인 경우 제공자가 성인만이 그 제공에 접근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허용된다.

③ 청소년보호법 제18조상의 목록에 포함시킨 제공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는 그 제공이 본질적이고 내용상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방심사국에 의하여 청소년위해적 매체라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 5 조 【성장침해적 제공】

① 아동이나 청소년이 책임감 있고 공동사회에 적합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공을 하거나 접근 가능케 하는 제공자는 당해 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러한 제공에 접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해당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 자유제공이 제한된 제공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성장침해 유형의 제공으로 추정된다. 제1문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위해추정으로 평가된 제공과 동일한 제공에 준용된다.

③ 다음의 경우 제공자는 제1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술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제공을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때

2. 제공을 하거나 접속하는 시간대를 해당 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그 제공을 접할 수 없는 때에 하였을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장침해적 효과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자는 23시와 06시 사이에서만 제공을 하거나 접속가능하게 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22시와 06시 사이에서만 제공되거나 접속가능한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 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장침해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12세 미만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영상인 경우에는 송출시간을 선택함에 있어 보다 어린 아동의 복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성장침해적 효력이 아동에게만 미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원격매체제공자가 그 제공을 아동용과 분리하여 제공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하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⑥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뉴스보도, 시간대별 정치관련 방송 및 이에 준하는 원격매체의 의한 제공을 실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광고와 원격쇼핑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① 제공에 대한 간접광고는 제공 자체의 제공요건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청소년 유해매체의 목록(청소년보호법 제18조)은 광고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시 제공 또는 동일 내용의 운반매체물을 청소년보호법 제18조상의 목록에 추가하

는 절차가 계속중이라든지 또는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광고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사항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아동 및 청소년의 무경험과 경솔을 이용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2. 아동 및 청소년이 그 부모 또는 제3자에게 광고상품 또는 광고서비스의 매매를 조르도록 직접적으로 충동하는 행위
3. 부모, 교사 및 기타 보호자에 대해 갖고 있는 청소년 또는 아동의 특별한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행위

③ 아동 또는 청소년이 책임성 있고 공동 생활적 소양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는 아동용 또는 청소년용의 제공과 분리시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광고가 아동용 내지 청소년용이거나, 광고에서 아동 내지 청소년이 묘사된 경우에는 아동 내지 청소년의 이익을 해하거나 그 무경험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알콜류 광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말을 거는 묘사방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이들을 묘사해서도 아니 된다. 원격매체를 통해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원격쇼핑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나아가 원격쇼핑은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독려해서도 아니 된다.

제 7 조 【청소년보호대리인】

① 州際TV放映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고 성장침해적 또는 청소년위해적 내용이

포함된 원격매체를 운영하면서 영업방식으로 제공하는 자 및 ARS제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격매체제공자가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두거나 매상이 한해 월 평균 1,0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거나, 또는 연방단위의 방송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적 자율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구가 청소년보호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3항에 따른 참여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청소년보호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대리인은 수신자를 위한 상담자이자 청소년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자문을 한다. 청소년보호대리인은 제공자로부터 제공의 제조·취득·계획·실시와 관련된 문제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모든 재판에 적시에 참여하고 해당제공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대리인은 제공자에게 제공의 제한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보호대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 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청소년보호대리인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 제공자의 청소년보호대리인이 직무수행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 2 절 방송에 관한 규정

제 8 조 【방송시간의 조정】

①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조합(국)(ARD)과 제휴하고 있는 주 방송기관, 독일 제2방송국(ZDF),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및 이 위원회가 승인한 임의적 자율기구들은 각각의 지침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

지 아니한 영화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TV에서의 영화상영, 특히 TV시리즈의 특성에 맞추어 시간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방송형태와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 열거한 기관들은, 주제 및 주제설정에 따르거나 실시 및 실연하는 방송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시간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 9 조 【예외규정】

①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조합(국)과 제휴하고 있는 州방송국이나 독일라디오 또는 독일 제2방송국의 해당기관은 프로듀서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또는 이 위원회가 승인한 임의적 자율기구는 민영방송국들의 요청에 따라 지침을 통해서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제5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특히 15년 이상 평가를 받은 제공인 때에 적용된다.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州청소년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州매체기구는 민영TV의 디지털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운영자가 그러한 방송을 고유한 기술적 방법으로 암호화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제5조상의 의무에 대한 이행조건을 정하는 공통의 정관을 만들 수 있다. 방송운영자는 시청자가 개별적 방송이나 개별적 영화의 방영시간 동안만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州매체기구는 특히,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떻게 방송을 암호화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을 제1조에 따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예고 및 표시제도】

①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은 암호화되지 않고 사전차단장치가 없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성장위해적 효과가 아동 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송은 청각적 표시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방영시간 내내 해당 연령층에 부적절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원격매체에 관한 규정

제3절은 제1절의 일반규정을 두 가지 점에서 보완한다.

첫째, 제5조 제3항 제1문을 보완하여 청소년매체보호협약 제11조에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기술적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서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을 규정하며 둘째, 동 협약 제12조에서는 원격매체에 의해 영화 및 개인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이 협약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원격매체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청소년보호 실무상 중요한 규정이 보완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원격매체제공자의 책임

청소년매체협약의 규정준수에 관한 원격매체제공자의 책임은, 나아가 원격서비스법에 따른 원격매체와 매체서비스주협약에 따른 원격서비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물론 규정은 문언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그 의미가 큰 점에 비추어 여기서는 이 규정들을 되짚어 본다.

제11조 【청소년보호프로그램】

- ① 원격매체의 제공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에 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공에 적절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청소년프로그램이 우선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은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주매체기구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재판한다. 재판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주의 주매체기구에서 담당한다. 승인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 ③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이 연령에 맞게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거나 또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승인요건이 사후에 소멸된 때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영업적으로 또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원격매체를 송출하거나 접근가능 하도록 하는 자는 승인된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설치를 기대할 수 있고 과도한 비용부담이 없는 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무해한 제공에 대해서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전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 예방조치 또는 기술적 가능성을 갖춘 시험용모델을 일정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시의무】

취입된 비디오카세트 및 화면상에서의 재연 또는 실연을 위해 영화 또는 게임으로 프로그램된 정보전달체로서,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또는 각 연령층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공된 것과 동일하거나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원격매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에 나타나 있는 표시를 분명하게 지적하여야 한다.

제 4 절 공영방송을 제외한 제공자에 대한 절차규정

이 절에서는 민영방송제공자 및 원격매체제공자에 대한 절차규정을 둔다. 공영방송에 대한 절차조항은 개별 방송법과 이 법을 기초로 제정된 정관규정에 담겨져 있다.

제13조 【적용범위】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4항 제6문은 州外供給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4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 ① 관할 주매체기구는 제공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이 협약에 따라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관할 주매체기구는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재판을 행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관할 주매체기구의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 위원회는 관할 주매체기구의 요청에 따라 州外 供給에 대해서도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항은 이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위원회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주매체기구의 이사 중 주매체기구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6명
2.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주 상급관청에서 4명
3.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상급관청에서 2명

각 위원들의 궐위시에 대비하여 제2문에 따라 각 대리인을 지정한다. 위원 또는 대리위원의 재임기간은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적어도 4명의 위원과 대리위원은 판사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위원장은 주매체기구의 이사가 맡는다.

④ 유럽연합기구·연방 및 주 헌법기관의 구성원과 종사자, 독일연방 공화국 공영방송조합(국)·독일 제2방송국·독일라디오·유럽TV방송(ARTE)과 민영방송국의 조합원과 종사자, 원격매체제공자 및 방송주협약 제28조에서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격매체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종사자 등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심판부를 둘 수 있다. 각 부는 적어도 제3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 1인 또는 그 궐위 시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심판부는 전원합의제로 재판하며 위원회를 대신한다. 심판절차는 위원회의 직무개시시에 위원회에 의하여 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활동규정에서 규율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이 주협약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 등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방송주협약 제24조의 신뢰의무에 관한 규정은 주매체기구의 다른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⑦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매체기구가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정관에서 정한다.
- ⑧ 주매체기구들은 청소년매체위원회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경제성과 긴축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한다.
- ⑨ 청소년매체위원회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방송감시 관련 비용은 방송지원협약 제10조에 따라 주매체기구의 예상항목에서 충당한다. 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원격매체 감시관련 비용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 일반회계예산에서 충당한다. 이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예산안은 당해 위원회가 소재한 주의 내각 또는 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다른 주의 내각 또는 상원과 조율한 후에 한다.
- ⑩ 청소년보호매체위원회의 활동소재지는 주지사들의 전원합의로 결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주매체기구의 심의기관의 협력】

- ①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주매체기구의 심의기관장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원칙적인 현안, 특히 정관초안이나 지침안을 만들 때 심의위원장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주법에 따른 주매체기구의 관할기관은 합의방식에 의한 정관과 이주협약의 시행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매체기구의 관할기관은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조합(국)과 공동가입한 주방송국 및 독일제2방송국과 협력하고, 주방송국 및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의 실현과 관련하여 축적한 경험교환을 실행한다.

제16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권한】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이 주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승인된 임

의적 자율기구의 권한과 관계없이 제1문의 범위 안에서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1. 이 주협약의 규정준수에 대한 감시
2. 임의적 자율기구의 설립에 대한 승인 및 그 취소나 철회
3. 제8조에 따른 방송시간의 조정
4. 제9조에 따른 예외의 인정
5. 암호화기술과 사전차단기술의 심사 및 승인
6.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승인 및 그 취소 또는 철회
7. 청소년위해매체임을 주장하여 연방심사국에 제출한 표시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
8. 이 주협약에 따른 반질서행위에 대한 재판

제17조 【청소년매체위원회의 절차】

- ① 청소년매체위원회는 직권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매체기구 또는 상급 주청소년국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정위원의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결정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유에서는 핵심적인 사실상·법률상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주매체기관의 다른 조직을 구속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조직의 재판의 기초가 된다.
- ② 위원회는 청소년 위해적 매체를 담당하는 연방심사국과 협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주매체기구의 심사국과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상급 주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상급 연방국에 처음에는 조직된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이 협약규정의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jugendschutz.net”】

- ① 상급 주청소년국에 의하여 설립된 주 공동 청소년보호망(jugendschutz.net)은 조직상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소속된다. 청소년보호망의 재

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주 관할장관이 결정에 의해 조례에서 정한다. 조례에는 또한 보호망의 전문적, 재정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② “jugendschutz.net”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와 상급 주청소년국이 자신의 업무로서 운영한다.
- ③ “jugendschutz.net”는 원격매체의 제공을 심사한다. 나아가 “jugendschutz.net”는 원격매체로 상담과 교육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 주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jugendschutz.net”는 제공자에게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와 청소년보호매체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의적 자율기구의 설립】

- ① 방송과 원격매체의 경우 임의적 자율기구의 설립이 가능하다.
- ② 승인을 받은 임의적 자율기구는 그 정관이 정하는 업무 범위 안에서 이 주협약규정과 당해 정관 및 이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제공자들에 대한 지침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해당하는 기구는 이 주협약에서 의미하는 임의적 자율기구로 승인받는다.
 1. 임명된 기구 내 심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문제를 담당하는 조합적 단체의 대표자를 두고 있는 경우
 2. 일단의 제공자들로 적절한 안전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3. 재판실무에서 아동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된 심사관에 의한 재판이 보장되는 경우
 4. 발기인의 경우 제출의무를 포함한 심사범위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주법으로 정하여진 청소년보조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심판에 대해 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5. 심판절차에서 관련 제공자의 소환과 재판이유의 서면기재 및 절차 참가인들에게 고지 등이 보장된 때
 6. 결정에 불복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 ④ 관할 주매체기구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재판한다. 임의적 자율기구가 소재하는 주의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할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주매체기구가 관할기관이 된다. 자율기구는 승인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기간은 4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 ⑤ 승인후 승인요건이 흠결되거나 자율기구의 심판실무가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저촉될 때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승인의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⑥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는 이 주협약의 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 5 절 제공자(공영방송 제외)에 대한 절차진행

제20조 【감독】

- ① 관할 주매체기구는 제공자가 이 주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방송운영자에 대해서는 관할 주매체기구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주법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가 특정의 방송운영자가 이 협약의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방송운영자는 그 방송 전에 이 주협약상의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에 제출하였으며 이 기구의 지침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운영업자가 청소년보호규정을 준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가 행한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의 재판이나 부작위가 법적으로 판단재량권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제공의 경우에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에 위반됨을 이유로(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4조 제1항의 위반 제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방송업자가 가입해 있는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가 먼저 처리한다. 이 경우 제1문이 준용되며,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1문이 적용된다.
- ④ 원격매체제공자에 대해서는 관할 주매체기구가 청소년매체보호위원

회를 통하여 매체서비스 주협약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개개의 재판한다.

⑤ 원격매체의 제공자가 이 주협약에서 의미하는 승인된 임의적 자율 기구에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그 기구의 정관에 복종하기로 한 경우에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반(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을 주장하면 위 기구가 먼저 주장된 위반문제에 대해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가 제공자에 대하여 행한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의 재판이나 부작위가 법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재판한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⑥ 방송운영자에게 허가되었거나 또는 원격매체의 제공자의 소재지·주소지, 이들이 없을 경우 상거소지가 있는 주의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에 따른 관할기관이 없는 때에는 직무행위발생소재지의 주매체기구가 관할한다.

⑦ 각 주는 이 주협약이 발효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특히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보고서와 승인된 임의적 자율기구 및 상급 주청소년국의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제3항과 제5항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심사한다.

제21조 【정보제공청구권】

① 원격매체의 제공자는 제공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그 제공에 대해 통제목적용의 무상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공에 대한 감독, 위반의 징벌 또는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상접근이 가능하며 제공자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관할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연방행정법원에의 상고】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판결이 이 주협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 6 절 제공자(공영방송 제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23조 【형법규정】

전파적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장 또는 책임성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한 인격체로서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제공을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2문에 반하여 전파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 분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질서위반행위】

①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질서위반한 때에는 반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1. 제공하거나 접근가능한 제공이

- a) 제4조 제1호에 반하여 형법상의 선동수단에 해당한 경우
- b) 제4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위험적 단체의 표식을 사용한 경우
- c) 제4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일부주민 내지는 국가적·민족적·종교적 또는 특정된 민중의 집단적 증오심을 자극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 또는 횡포를 권유하거나, 일부주민 또는 위에서 열거한 집단을 비하하고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
- d) 제4조 제1항 제4호에 반하여 민족사회주의의 이름아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해하는 방법으로 국민헌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를 자행한 경우
- e) 제4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여 인간에 대한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광포행위를 찬양하거나 무해하다고 표현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광포행위를 다루는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f) 제4조 제1항 제6호에 반하여 형법 제126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매체로 이용한 경우
 - g) 제4조 제1항 제7호에 반하여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 h) 제4조 제1항 제8호에 반하여 특히 죽어가고 있거나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처해있거나 처해졌던 인간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 그러한 묘사 또는 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사실을 재현한 경우라야 한다.
 - i) 제4조 제1항 제9호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부자연스럽게 성을 내세운 묘사를 한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j) 제4조 제1항 제10호에 반하여 포르노그래픽과 폭력행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학대 또는 동물과 인간의 성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를 가상공간에서 묘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k)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중 B군과 C군에 열거되었거나 이 목록에 열거된 작품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
2.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포르노성 제공을 이행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
 3. 제4조 제2항 제2호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A군과 C군에 열거되어 있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거나 접근가능케 한 경우
 4. 제5조 제1항에 반하여 해당 연령층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임 없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책임감 있고 공동체적으로 적합한 인격체로의 성장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공을 이행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한 경우
 5.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반하여 표시된 제공에 대해 광고나 원격쇼핑을 제공하거나 접근가능케 한 경우
 6.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반하여 청소년 위해적 매체의 목록을 제공하거나 접근가능케 한 경우

7.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반하여 여기에 규정된 지시를 제공하는 경우
 8. 제7조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9. 제8조 제2항에 따른 방송제한시간을 위반한 방송의 경우
 10.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장침해적이라고 추정된 방송을 제공한 경우, 다만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또는 이 위원회가 승인한 임의적 자율기구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추정을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10조 제1항에 반하여 적절한 방송시간이 아니 때 또는 암호화하지 않고 동영상 프로그램예고를 내보냈을 경우
 12. 제10조 제2항에 반하여 청각적 방법에 의한 방송예고를 하지 않거나 방송하는 동안 시각적 방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않고 방송한 경우
 13.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지시를 표시하지 않는 제공을 이행하는 경우
 14.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감독기구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 제1항에 반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관할감독 기관의 접근을 못하도록 제공을 차단하는 경우
- ② 나아가 다음 각호의 고의적인 각 행위도 반질서행위이다.
1. 제11조 제5항에 반하여 원격매체가 해당 연령층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적당한 것이라고 그릇되게 표시한 경우
 2.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임의적 자율기구의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 ③ 질서위반 행위는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질서위반행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미하는 관할행정청은 관할주매체기구이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운영자에게 허가한 주, 원격매체의 제공자의 소재지·주소지, 또는 (이들이 없는 경우) 상거소지가 있는 주의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른 관할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행위발생소재지가 속하는 주

의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의적 자율기관의 소재지가 있는 주의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른 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매체기구가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 주매체기구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재판을 행한다.

⑤ 소송의 개시에 대해서는 관할 주매체기구가 여타의 주매체기구들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개의 주에 동일한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어느 기관에서 그 절차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참가관청들이 의견을 조율한다.

⑥ 관할 주매체기구는 이 주협약의 규정위반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서위반절차에서 내린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를 해당 제공자가 자신의 제공에서 공표하거나 또는 이 제공에서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기간은 6개월이다.

제 7 절 종결규정

제25조 【여타 주협약의 변경】

이 조항에서는 라디오주협약, 독일 제2방송국주협약, 독일라디오주협약 및 매체서비스주협약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함께 규정한다. 개개 협약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제26조 【유효기간, 소멸】

① 이 주협약은 무기한 적용된다. 이 협약을 체결한 모든 주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말에 탈퇴할 수 있다. 최초의 탈퇴선언은 2006년 12월 30일에 할 수 있다. 협약관계는 제20조 제3항 및 제5항에 비추어 2006년 12월 31일에 후반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당해 연도 연말에 특별탈퇴가 허용된다. 이 기간까지 주협약에서 탈퇴하지 아니

하면, 그 후 동일한 기간으로 매 2년 마다 탈퇴할 수 있다. 탈퇴선언은 주각료(수상)회의 의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어느 한 주의 탈퇴는 여타의 주사이의 조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여타의 각주는 탈퇴선언이 있는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시점으로 조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서 변경된 주협약의 탈퇴에 대해서는 해당 조약에서 정하는 탈퇴규정에 따른다.

제27조 【비준】

이 주협약의 변경은 유럽의회지침 98/48/EG 및 정보절차에관한지침 98/34/EG의 규범과 기술적 규정의 변경을 위한 1998년 7월 20일자각료회의 지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제28조 【효력발생. 공포】

① 이 주협약은 2003년 4월 1일 발효된다. 2003년 3월 31일까지 모든 비준문서를 각료회의의 장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이 주협약은 실효된다.

② 주정부각료(수상)회의의장의 주사무국 또는 시정부청은 비준문서의 위탁을 모든 주에게 통지한다

③ 각 주의 주사무국 및 시(정부)청은 방송주협약, 독일 제2방송국주협약, 독일라디오주협약 및 매체서비스주협약의 문언을 제25조에 따라 개정된 형태로 새로운 날짜로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참 고 문 헌

- 김광목,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2000.
- 김영환, 청소년 유해매체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연구, 형사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권영성,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有害媒體物의 流通規制, 고시연구, 고시 연구사, 1997. 11.
- 김재규, 청소년보호법, 法制(旬刊) 499號 (99.07)
- 김수영,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등급제도, 법정논총(중앙대학교) 제37권 통권 제51집, 2002.2.
- 김혜정, 청소년보호연령과 관련된 (법률)착오의 문제점, 比較刑事法研究, 세종출판사.
- 법제처, 각국의 청소년관계법(법제자료 제155집), 1990.
- 이동진,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2.
- 장명근, 청소년관계 현행법제도의 정리, 법제(순간) 35호 (82.12).
- 최충욱외 4인, 청소년관련 법제정비방안과 청소년행정조직 통합방안 연구(연구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3.
- 한상희, 청소년정책과 국가의무 : 법, 제도, 그리고 비판, 한림법학 FORUM 제12호.
-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참 고 문 헌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동성출판사.

황승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향, 한림법학 FORUM 제12호.

田宮 裕, (注釋)少年法, 有斐閣, 2001.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有斐閣, 2000.

菊田辛一, 少年法概說, 有斐閣, 2003.

吉岡征雄, 青少年の保護, ジュリスト(1982 - 1991) No.852.

Dian Schefold, Jugendschutz vor Video und in der Öffentlichkeit,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v.17 -5), 1984.

Faber, Tim, Jugendschutz im Internet : klassische und neue staatliche Regulierungsansätze zum Jugendmedienschutz im Internet, Duncker & Humboldt (2005).

Oliver Castendyk, Jugendschutz im Fernsehen-zweiter Akt,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v.47 -3), 1993.

Oliver Siegert, Jugendschutz im Fernsehen,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zu MDR 4/93,S.192), 1993.